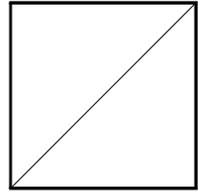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1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금융감독원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0. 12. 22.

## 1. 의결주문

- 금융감독원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 요청하고자 함

## 3.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기본원칙

- ①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2021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20.9월)을 토대로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공공기관 예산지침, '20.12월)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 특히, 금융감독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회사 등에서 조달하는 만큼 예산 증액으로 과도한 민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의
- ② 금융회사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 4. 주요내용

- 총지출예산 : 3,659.5억원('20년 3,629.6억원 대비 +0.8% 증액)
  - 당초 금융감독원 요청액 4,106.5억원 대비  $\Delta 10.9\%$ ( $\Delta 447.0$ 억원) 감액
  
- 총인건비 : 2,205.3억원 ('20년 2,183.3억원 대비 +1.0%)
  - '21년도 금융감독원 및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4% 적용
  - 그 외에 총인건비 상한과 별도로 인정되는 '20년도 정원증원효과(20명, +10.3억), 임원보수 인상(2.8%) 및 임원수 증가(15→16명) 등 반영
  
- 정원의 인건비 : 0.96억원 ('20년 0.77억원 대비 +23.4%)
  
- 퇴직급여 : 246.5억원 ('20년 274.5억원 대비  $\Delta 10.2\%$ )
  
- 경비 : 793.1억원('20년 794.8억원 대비  $\Delta 0.2\%$ )
  
- 운영외비용등(법인세 포함) : 59.7억원('20년 56.1억원 대비 +6.4%)
  
- 자본예산 : 115.9억원('20년 86.3억원 대비 +34.3%)
  
- 예비비 : 238.2억원('20년 233.9억원 대비 +1.8%)
  - (목적예비비) 평가상여금 154.1억원, 경영효율화 인센티브 10.5억원, 인력증원 31.8억원, 소송 관련 예비비 34.3억원
  - (일반예비비) 7.5억원

< 2021년도 금융감독원 지출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 (A)	2021년도 예산		증감액 (C=B-A)	증감률 (C/A)
		요 구	조 정(B)		
총 인 건 비	218,332	223,919	220,525	2,193	1.0%
정원외인건비	77	96	96	18	23.4%
퇴 직 급 여	27,448	29,552	24,650	△2,798	△10.2%
경 비	79,475	87,636	79,315	△160	△0.2%
운영외비용등	5,606	5,929	5,967	361	6.4%
자 본 예 산	8,627	21,289	11,585	2,958	34.3%
예 비 비	23,391	42,229	23,816	425	1.8%
<b>총 지 출 (계)</b>	<b>362,957</b>	<b>410,650</b>	<b>365,954</b>	<b>2,997</b>	<b>0.8%</b>

< 2021년도 금융감독원 수입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예산(A)	2021 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운 영 수 입	359,722	363,111	3,389	0.9%
감독분담금 <sup>주)</sup>	278,799	265,381	△13,418	△4.8%
발행분담금	70,440	87,250	16,810	23.9%
한은출연금 <sup>주)</sup>	10,000	10,000	-	동결
기타수입수수료	483	480	△3	△0.6%
운영외수입	3,235	2,843	△392	△12.1%
<b>총 수 입 (계)</b>	<b>362,957</b>	<b>365,954</b>	<b>2,997</b>	<b>0.8%</b>

주) 한은출연금 규모가 변동될 경우 변동액 만큼 감독분담금 조정

5. 참고사항

< 붙임 > 관계법규

< 별 지 : 2021 회계연도 예산서(안) >

## 관계 법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2.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3. 금융감독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021 회계연도 예산서

2020. 12.

금 융 감 독 원

## 목 차

예산 총칙 .....	1
[별표1] 추정 수지계산서 .....	5
[별표2] 부문별 예산 .....	6
[별표3] 사업비 예산 .....	9
[별표4] 정보화사업 관련 자본예산 소요규모 .....	10
[별첨] 부대의견 .....	11

## 예산 총칙

제1조 (예산의 규모) ① 2021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추정수지계산서

(단위: 천원)

차 변		대 변	
지 출	365,953,551	수 입	365,953,551

- ② 추정수지계산서의 관·항별 금액은 별표1과 같다.
- ③ 수입예산 및 총지출예산(지출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의 관·항별 금액은 별표2와 같다.
- ④ 지출예산의 사업별 금액은 별표3과 같다.
- ⑤ 정보화·DART 사업 관련 자본예산 소요규모는 별표4와 같다.

제2조 (총인건비) 금융감독원장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정원) ① 2021년도 금융감독원 직원의 정원은 2,026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급	2급	3급	4급 이하	계
정 원	62	248	512	1,204	2,026

- ② 직급별 정원과 별도로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51명, 전문사무원(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소속 4명 포함) 및 민원처리전문직원 265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상위직급의 결원은 하위직급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집행의 원칙) 금융감독원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직, 인원 및 보수수준 등의 적정화와 경비의 절약을 통하여 내부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전용)** ① 지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관·항간 전용

2. 사업비 예산과 비사업비 예산 간 전용. 다만, 비사업비 예산에서 사업비 예산으로의 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도서인쇄비, 용역비 중 비사업비 예산에서 동일 비목의 금융교육 사업비 예산으로의 전용

나. 여비교통비 중 비사업비 예산에서 동일 비목의 검사, 금융교육 또는 국제협력 예산으로의 전용

다. 전산업무비 중 비사업비 예산에서 동일 비목의 정보화, DART 예산으로의 전용

3. 사업비 예산 간 전용

4. 경비 항 내의 타 비목에서 다음의 비목으로의 전용

가. 복리후생비

나. 체육교양비

다. 교육훈련비

라. 업무추진비

② 자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타 비목에서 다음의 비목으로의 전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토지

나. 건물

다. 차량운반구

라. 제가입권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 그 전용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 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제6조 (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평가상여금 지급률)** ①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상여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임 원	82	71	58	43	9	0
직 원	160	140	116	88	20	0

\* 임원 : 기본급×지급률      \*\* 직원 : 기준봉급×지급률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및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효율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임직원의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초과집행)** 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가. 퇴직급여

나. 세금과공과

다. 등기소송비

라. 보험료

마. 운영외비용

바. 법인세비용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초과계리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당해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 초과계리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 다만, 통상임금소송 관련 예비비 편성액(기존 편성액을 포함한다)이 2021년 중 소요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한 자본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부대비용은 1회에 한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 관련 특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소송 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관련)

**제11조 (예산과목의 변경)** 회계규정 등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과목에 상당하는 금액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감독분담금의 이월)** 2020년 중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추가 부과한 감독분담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13조 (예산총칙의 개정)** ① 본 총칙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사항을 정한 경우 총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본 총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1] 추정 수지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 감
관	항			
1.운영수입		359,722,167	363,110,951	3,388,784
	감독분담금 <sup>주)</sup>	278,799,394	265,381,138	△13,418,256
	발행분담금	70,440,000	87,250,000	16,810,000
	한국은행출연금	10,000,000	10,000,000	-
	기타수입수수료	482,773	479,813	△2,960
2.운영외수입		3,234,874	2,842,600	△392,274
	수입이자	1,605,295	1,169,871	△435,424
	수입임대료	243,729	243,729	-
	공인회계사시험수수료	724,850	755,000	30,150
	국고보조금	505,000	518,000	13,000
	기타운영외수입	156,000	156,000	-
<b>수 입 총 계</b>		<b>362,957,041</b>	<b>365,953,551</b>	<b>2,996,510</b>
1.일반관리비		325,332,855	324,585,760	△747,094
	총인건비	218,332,431	220,525,410	2,192,979
	정원외인건비	77,400	95,509	18,109
	퇴직급여	27,447,993	24,650,000	△2,797,993
	경비	79,475,031	79,314,841	△160,190
2.운영외비용		5,326,725	5,754,959	428,234
	지급수수료	882,058	937,858	55,800
	공인회계사시험관리비	1,338,162	1,407,186	69,024
	한국회계기준원지원금	2,601,505	2,891,915	290,410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비	505,000	518,000	13,000
3.법인세비용		279,417	211,702	△67,715
4.자본예산		8,627,159	11,585,380	2,958,221
5.예비비		23,390,885	23,815,750	424,865
	목적예비비	22,190,885	23,065,750	874,865
	일반예비비	1,200,000	750,000	△450,000
<b>지 출 총 계</b>		<b>362,957,041</b>	<b>365,953,551</b>	<b>2,996,510</b>

주) 한은 출연금 규모가 변동될 경우 변동액 만큼 감독분담금 조정

## [별표2] 부문별 예산

### 1.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 감
관	항			
1.운영수입		359,722,167	363,110,951	3,388,784
	감독분담금 <sup>1)</sup>	278,799,394	265,381,138	△13,418,256
	발행분담금	70,440,000	87,250,000	16,810,000
	한국은행출연금	10,000,000	10,000,000	-
	기타수입수수료 <sup>2)</sup>	482,773	479,813	△2,960
2.운영외수입		3,234,874	2,842,600	△392,274
	수입이자	1,605,295	1,169,871	△435,424
	수입임대료	243,729	243,729	-
	공인회계사시험수수료	724,850	755,000	30,150
	국고보조금	505,000	518,000	13,000
	기타운영외수입 <sup>3)</sup>	156,000	156,000	-
<b>수입예산 합계</b>		<b>362,957,041</b>	<b>365,953,551</b>	<b>2,996,510</b>

주 1) 한은 출연금 규모가 변동될 경우 변동액 만큼 감독분담금 조정

2) 기타수입수수료 : 보험전문인시험 응시수수료 등

3) 기타운영외수입 : 보육교사 정부지원금

## 2. 총지출예산

### 가. 지출예산

(단위 : 천원)

비목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 감
<b>총인건비 (a)</b>	<b>218,332,431</b>	<b>220,525,410</b>	<b>2,192,979</b>
정원의외 인건비 (b)	77,400	95,509	18,109
<b>퇴직급여 (c)</b>	<b>27,447,993</b>	<b>24,650,000</b>	<b>△ 2,797,993</b>
급식비	862,050	862,050	동결
복리후생비(비급여성)	1,939,568	2,026,096	86,528
체육교양비	286,000	243,100	△ 42,900
포상비	186,000	313,776	127,776
여비교통비	4,410,154	3,036,557	△ 1,373,597
도서인쇄비	927,563	939,446	11,883
광고홍보비*	906,038	556,073	△ 349,965
교육훈련비	4,440,124	4,284,470	△ 155,654
용역비	10,468,907	11,023,651	554,744
전산업무비	12,318,165	13,623,557	1,305,392
소모품비	824,452	814,261	△ 10,191
차량비	305,070	219,111	△ 85,959
통신비	1,259,470	1,233,184	△ 26,286
회의행사비	1,684,680	1,650,829	△ 33,851
특정업무경비	36,000	36,000	동결
당직비	321,000	321,000	동결
수선유지비	1,122,418	1,122,418	동결
임차료	7,327,943	7,019,302	△ 308,641
수도광열비	2,460,360	2,409,360	△ 51,000
감가상각비	3,236,485	3,216,262	△ 20,223
세금과공과	21,614,684	21,884,705	270,021
등기소송비	673,670	694,907	21,237
보험료	225,230	227,676	2,446
업무추진비	1,639,000	1,557,050	△ 81,950
<b>경비 계 (d)</b>	<b>79,475,031</b>	<b>79,314,841</b>	<b>△ 160,190</b>
지급수수료	882,058	937,858	55,800
공인회계사 시험관리비	1,338,162	1,407,186	69,024
한국회계기준원지원금	2,601,505	2,891,915	290,410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비	505,000	518,000	13,000
법인세비용	279,417	211,702	△ 67,715
<b>운영외비용+법인세비용 계 (e)</b>	<b>5,606,142</b>	<b>5,966,661</b>	<b>360,519</b>
<b>지출예산 합계 (f=a+b+c+d+e)</b>	<b>330,938,997</b>	<b>330,552,421</b>	<b>△ 386,576</b>

\* 기존 광고홍보비 중 약 3.8억원을 '21년도부터 용역비, 회의행사비, 여비교통비, 포상비 등으로 각각 나누어 편성함

## 나. 자본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 감
차량운반구	-	252,000	252,000
임차보증금	285,600	627,507	341,907
제가입권	-	-	-
공구기구집기	3,937,456	3,635,509	△ 301,947
개발비	2,152,176	5,318,523	3,166,347
소프트웨어	2,251,927	1,651,841	△ 600,086
기타자본예산	-	100,000	100,000
<b>자본예산 계</b>	<b>8,627,159</b>	<b>11,585,380</b>	<b>2,958,221</b>

## 다. 예비비

(단위 : 천원)

비 목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 감
<b>목적예비비</b>	<b>22,190,885</b>	<b>23,065,750</b>	<b>874,865</b>
(인력증원)	1,390,107	3,180,435	1,790,328
(평가상여금)	16,136,235	15,408,839	△ 727,396
(경영효율화인센티브)	4,237,577	1,046,476	△ 3,191,101
(소송관련 예비비)	426,966	3,430,000	3,003,034
<b>일반예비비</b>	<b>1,200,000</b>	<b>750,000</b>	<b>△ 450,000</b>
<b>예비비 계</b>	<b>23,390,885</b>	<b>23,815,750</b>	<b>424,865</b>

### [별표3] 사업비 예산

제1조제4항 “사업비 예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 감
금융회사 검사	2,147,725	1,563,933	△ 583,792
금융교육	1,179,789	1,267,843	88,054
교육훈련	4,317,750	4,064,622	△ 253,128
DART	6,971,641	6,612,704	△ 358,937
정보화사업	9,841,417	13,404,535	3,563,118
국제회의·국제협력	1,026,824	635,586	△ 391,238
해외사무소	3,885,536	3,882,272	△ 3,264
계	29,370,682	31,431,495	2,060,813

[별표4] 정보화·DART 사업 관련 자본예산 소요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금액
<b>정보화사업</b>		<b>6,661,814</b>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신규	413,625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재구축	신규	1,326,164
금융정보교환망시스템 웹 표준화	신규	191,000
민원관리시스템 개선 및 민원이상징후 인지시스템 구축	신규	391,000
금융교육 온라인 콘텐츠물 구축	신규	400,000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 고도화	신규	230,000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개선	신규	260,000
금감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	신규	626,000
공시심사 업무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신규	282,318
TM불완전판매식별 지원시스템 개선	신규	321,660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사업	계속	80,000
정보시스템 및 사무자동화 기기 도입	계속	2,140,047
<b>DART</b>		<b>2,925,290</b>
재무공시 선진화 및 데이터수집, 분석, 개방체제 구축	신규	1,696,000
기업공시 모니터링 등 공시심사기능 강화	신규	268,000
Open DART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신규	540,000
DART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고도화	신규	120,000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 DART 인프라 강화	계속	301,290

## [별첨] 부대의견

- 아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차원의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2020 회계연도 결산심의시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대분류	제목	내용
총인건비	총인건비 상한 내 예산편성	○ 향후 기본급이나 기준봉급 이외에 직무급, 수당 등을 신설 ·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인건비 상한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 등을 거쳐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것
사업성 예산	정보화 사업 · DART	○ 향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 전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서 제출 전에 연도별·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필요액 및 비용/편익 추계가 포함된 중장기 사업계획을 예산소위에 보고할 것  ○ '22년도 예산서부터는 현재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도 정보화 또는 DART 사업비에 반영하여 편성할 것
	국제회의 · 국제협력	○ '22년도 예산서부터는 세금과공과 비목 중 국제기구 분담금도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사업비에 반영하여 편성할 것
기타	취업규칙 의 변경	○ 향후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예:복지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할 것
	부대조건 이행	○ 최근 5년간 부대의견 이행현황(예 : 노사합의, 규정개정 등)에 대해 '20년 결산소위에 보고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2-2100-2782